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000 을 「갑」이라 하고, 채무자 000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이자) 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되 제3조 정한 기한의 익일부터 실질 변제시 까지 년0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변제장소) 「을」의 「갑」에 대한 변제 장소는 「갑」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2. 「을」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3. 「을」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제6조 (위약금) 「을」이 「갑」으로부터 채무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을」은 「갑」에 대하여 위약금으로서 금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차용금 및 기타 부대채무의 상

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을」이 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
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1월 1일

「갑」 성 명 : (인)
주인등록번호 :
주 소 :

「을」 성 명 : (인)
주인등록번호 :
주 소 :